

1. 개정이유

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및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해외 자원에 대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「관세법」이 개정(법률 제21208호, 2026. 4. 1. 시행 예정)됨에 따라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, 천재지변이나 여객기·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출되지 않은 보세판매장 판매 물품을 여행자 휴대품 관세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는 한편,

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려 사유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의 반려사유 정비 (안 제33조의2)

분석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분석이 곤란한 경우,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및 동일인이 동일한 물품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를 반려할 수 있는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, 이에 준하는 사유를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

나. 관세 감면 대상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규정 (안 제39조제5항 신설)

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

중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구매를 신청한 의약품 및 식품의약품안전처
장이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 의약품의 관세를 감면토록 함

다. 관세 감면 대상 해외개발자원 규정 (안 제43조제12항 신설)

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에서 개발한 자원 중 해당 사업자가 지분
및 처분권을 확보한 물량에 대해 관세를 감면토록 함

라.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 반출되지 않은 보세판매장 판매 물품의 면세
반입 허용(안 제48조제1항제4호 신설)

외국 반출되지 않은 보세판매장 판매 물품으로서 천재지변, 여객기·
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라고 세관장이 인정하여 회수하지 않
은 물품을 여행자 휴대품 관세 감면 대상으로 추가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3. 3. ~ 3. 1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의2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분석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분석이 곤란한 경우
4.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5. 동일인이 동일한 물품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
6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

제37조제2항제25호 중 “「국립암센터법」”을 “「암관리법」”으로 한다.

제3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법 제91조제4호의2에서 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.

1.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 제3호나목2)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(이하 이 조에서 “희귀난치성 질환”이라 한다)을 가진 자가 자신의 희귀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「약사법」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에 구매를 신청한 의약품
2.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

약품으로서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

제4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제4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한다.

⑤ 법 제91조제4호의2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.

1. 제39조제1호의 물품: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(수입하려는 의약품이 구매를 신청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의 희귀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견이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)

2. 제39조제2호의 물품: 수입하려는 의약품이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확인한 서류

제43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⑫ 법 제93조제19호에서 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「국가자원안보 특별법」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핵심광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.

1. 「해외자원개발 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의 방법을 통해 생산한 자원일 것

2. 연간 수입량이 다음 각 목의 물량 합계 이내일 것

가. 개발 대상 광구의 연간 생산량 중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취득한 지분 비율(「해외자원개발 사업법」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

다른 투자 비율 중 해당 광구의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비율을 말한다)만큼의 물량

나. 개발 대상 광구의 연간 생산량 중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가목에 따른 물량 외에 처분권을 확보한 물량. 다만, 가목에 따른 물량의 2배 이내로 한정한다.

제44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법 제93조제19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수입하려는 자원의 해외자원개발사업자, 해외자원개발방법 등 감면 요건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산업통상부 장관이 확인한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산업통상부 장관은 확인의 방법·절차·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제48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영 제213조제3항에 따라 세관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면세품으로서 회수하지 않은 물품

제5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법 제93조제19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1. 제39조제5항, 제40조제5항 및 제6항, 제48조제1항제4호: 2026년 4월 1일
2. 제43조제12항, 제44조제8항, 제58조제4호: 2026년 7월 1일

제2조(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관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39조제5항, 제40조제5항 및 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해외개발자원 관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43조제12항, 제44조제8항, 제58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여행자 휴대품 관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4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회수하지 않는 물품부터 적용한다.

관세 등 납세증명서

Payment Certificate of Customs duties, etc.

(앞쪽)

발급번호 Issuance Number		접수일 Date of receipt		처리기간: 즉시 Processing period: Immediately	
납세자 Taxpayer	상호(법인명) Name of Corporation		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umber		
	성명(대표자) Name(Name of representative)		주민등록번호/여권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/Passport Number		
	주소 Address				
증명서의 사용 목적 Purpose of Certificate	☐ 대금수령 [] Receipt of payment		대금 지급자 Payer		
	☐ 해외이주 [] Emigration		해외이주 허가번호 해외이주 허가일 년 월 일 Emigration Permission No. Date of the Permission yyyy mm dd		
	☐ 그 밖의 목적 [] Others				
신청세관 Application Customs		증명서 신청부수 Copies of Certificate Needed		부 Copy(Copies)	
징수유예/압류·매각유예의 명세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(단위: 원 Unit: Won)					
유예종류 Type of taxes suspended		유예기간 Period of taxes suspended		세액 Tax Amount	
「관세법」 제1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의5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또는 압류·매각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I request to certify that I have no delinquent taxes except for the above-mentioned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as of the issued date of this certificate,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116-3 of the Customs Act and the Article 141-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.					
				년(yyyy) 월(mm) 일(dd) 신청인(납세자) (서명 또는 인) Applicant(Taxpayer) (Signature or Stamp)	
위와 같이 증명합니다.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correct.					
1. 증명서 유효기간: Period of Validity		년(yyyy) 월(mm) 일(dd)			
2.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: Reason for determining the validity date		년(yyyy) 월(mm) 일(dd)			
세 관 장 직인 Head of () Customs House		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의2(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) 영 제106조 제3항제5호의 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33조의2(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3. 분석이 필요한 물품으로서</u> <u>분석이 곤란한 경우</u>
<u><신 설></u>	<u>4.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분석</u> <u>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</u> <u>우</u>
<u><신 설></u>	<u>5. 동일인이 동일한 물품을 반</u> <u>복하여 신청하는 경우</u>
<u><신 설></u>	<u>6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</u> <u>지에 준하는 사유로 사전심사</u> <u>또는 재심사가 곤란하다고 관</u> <u>세청장이 정하는 경우</u>
제37조(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 용품) ① (생 략)	제37조(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 용품) ① (현행과 같음)
②법 제90조제1항제2호에서 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②----- ----- -----.
1. ~ 24. (생 략)	1. ~ 24. (현행과 같음)
25. 「국립암센터법」에 따라	25. 「암관리법」-----

설립된 국립암센터 및 「국립
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
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
국립중앙의료원

26. ~ 34. (생 략)

③ ~ ⑤ (생 략)

제39조(종교·자선·장애인용품
에 대한 관세의 부과) ① ~ ④
(생 략)

<신 설>

26. ~ 34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39조(종교·자선·장애인용품
에 대한 관세의 부과) ① ~ ④
(현행과 같음)

⑤ 법 제91조제4호의2에서 “재
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약
품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.

1.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
별표 2 제3호나목2)에 따라 보
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
하는 희귀난치성 질환(이하
이 조에서 “희귀난치성 질환”
이라 한다)을 가진 자가 자신
의 희귀난치성 질환을 치료하
기 위해 「약사법」 제91조에
따른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
터에 구매를 신청한 의약품으
로서 「약사법」 제42조제1항
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
에게 의약품 수입에 관하여

제40조(종교·자선·장애인용품
에 대한 관세면제신청) ① ~
④ (생략)
<신설>

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약품
이 아닌 의약품

2.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
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
인정하는 의약품으로서 희귀
난치성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
의약품

제40조(종교·자선·장애인용품
에 대한 관세면제신청) ① ~
④ (현행과 같음)

⑤ 법 제91조제4호의2에 따라
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
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신
청서에 첨부해야 한다.

1. 제39조제1호의 물품: 의료법
제17조에 따른 진단서(수입하
려는 의약품이 구매를 신청한
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의 희
귀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
한 것이라는 소견이 기재된
것으로 한정한다)

2. 제39조제2호의 물품: 수입하
려는 의약품이 희귀난치성 질
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
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
확인한 서류

⑤ 세관장은 당해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참작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및 증명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.

제43조(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) ① ~ ⑪ (생략)

<신설>

⑥ -----

----- 제5항 -----

-----.

제43조(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) ① ~ ⑪ (현행과 같음)

⑫ 법 제93조제19호에서 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「국가자원안보 특별법」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핵심광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.

1. 「해외자원개발 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의 방법을 통해 생산한 자원일 것

2. 연간 수입량이 다음 각 목의 물량 합계 이내일 것

가. 개발 대상 광구의 연간 생산량 중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취득한 지분 비율

제44조(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) ① ~ ⑦ (생략)

<신설>

(「해외자원개발사업법」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투자 비율 중 해당 광구의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비율을 말한다)만큼의 물량

나. 개발 대상 광구의 연간 생산량 중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가목에 따른 물량 외에 처분권을 확보한 물량. 다만, 가목에 따른 물량의 2배 이내로 한정한다.

제44조(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

⑧ 법 제93조제19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수입하려는 자원의 해외자원개발사업자, 해외자원개발방법 등 감면요건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산업통상부 장관이 확인한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산업통상부 장관은 확인의 방법·절차·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제48조(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) ①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 4. (생략) ② ~ ⑥ (생략) 제58조(사후관리면제) 법 제102조제1항 단서에서 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48조(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) ①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영 제213조제3항에 따라 세관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면세품으로서 회수하지 않은 물품</u>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 제58조(사후관리면제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법 제93조제19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</u>
--	---